

장기요양급여 이용안내

* 급여종류: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

1. 입소대상 : 장기요양인정자(기초수급자, 경감대상자, 일반) ,등급외자

2. 입소정원 : 9명

3. 입소계약

- 계약의 목적: 시설과 입소자,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.
- 계약기간: 입소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.
- 계약의 해지
입소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,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.
- 입소계약서작성(본인 및 보호자)
- 의사진단 및 소견서 1부(해당자에 한함)
- 보호자 주민등록등본 1통
- 장기요양인정서,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(각1부사본)

※ 기초생활수급권자 : 입소비용 의뢰서 승인(시청/구청)
기초생활수급권 어르신은 입소 전 주소지 동(읍/면)
사무소를 통하거나 시군구 노인복지과를 통하여 입소신청 의뢰서를 작성하여
제출 후 승인이 떨어져야 비용급여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※ 경감대상자(개인부담12%,8%) : 경감대상확인서

4. 신원인수인의 권리

- 1)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
- 2)입소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- 3)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
- 4)입소자에 대한 건강,식사,생활상담,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- 5)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
- 6)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- 7)입소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
- 8)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,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
- 9)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면회 및 외박,외출에 관한 권리

5. 신원인수인의 의무

- 1)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,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
- 2)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등을 포함함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
- 3)인적사항등의 정보 변경시 통보에 관한 의무
- 4)장기출장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통보 의무
- 5)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,집기 등의 오손,파손,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

6. 면회시간 : 입소 어르신의 심신안정과 생활리듬이 깨지지 않기 위하여 18시이후
제한하오니 보호자분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7. 직원 근무편성 1)시설장 1인(주간근무09:00~18:00)
2)주간전담요양보호사 1인(주간근무09:00~18:00)
3)간호조무사 1인(주간근무09:00~18:00)
4)요양보호사 3인(교대근무09:00~익일09:00)
5)조리사 1인(주간근무09:00~18:00)

8. 비 급여 항목

- 1) 식사비 : 식재료비 2,400원 * 3식 1일 간식 1,000원 (일 8,200원)
- 2) 이 미용비 : 무료
- 3) 병원이용시, 약제비 : 실비청구

9. 월이용료 산정기준(30일기준)

등급	산정금액	개인부담(20%)	개인부담(12%)	개인부담(8%)	기초 수급권자	비급여
1	2,174,400	434,880	260,920	173,950	0	246,000
2	2,017,500	403,500	242,100	161,400	0	246,000
3,4,5	1,860,000	372,000	223,200	148,800	0	246,000

10. 시설규모 : 251.7㎡

시설현황

침실 (계)	1인실	2인실	3인실	4인실	특수 침실	사무실	물리치료 실/프로 그램실	주간 보호실	거실	조리실	화장실 세면장및목욕실	세탁장및 건조실
4	1	1	2	0	0	1	1	0	1	1	1	0

11. 영업배상책임보험 :KB손해보험(전문인보장포함)

12. 화재보험 : KB손해보험

13.필요시 의료이용기관

- 기관협력병원- 차량이용 : 병원이용시 응급시(119)